

에너지분야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귀결

- 해외입법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

법무법인 청진

배 성 렬¹⁾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II. OECD 뇌물방지협약

1. 개요
2. 주요내용
3. 각국의 이행정도

III. 주요국가의 뇌물관련 입법

1. 미국 FCPA, 1977
2. 영국 Bribery Act, 2010
3. 캐나다 CFPOA, 1998
4. 구체적 사례 검토

IV. 제언

¹⁾ 법무법인 청진 대표변호사, EMAIL : seong@lawcj.net, TEL : 02-735-5374, FAX : 02-733-4815. 주요업무 분야: 에너지·자원법, 환경법, 국제거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9기, 뉴욕주 변호사.

초 록

에너지, 자원분야는 대규모 투자, 세계적 활동, 자원부국의 체계화되지 못한 통제시스템,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가의 자원에 대한 정부통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에너지, 자원분야는 특히 뇌물을 포함한 부패에 취약한 산업분야로 알려져 왔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내의 부패 즉, 뇌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한발 뒤에 물러서 있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자국인의 해외에서의 부정행위 특히 뇌물을 규제하는 규범으로는 미국이 1977년 제정한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가 거의 유일하였다 하겠다. 그런데 국가간 국제적인 교역이 증대하고, 국제간 상거래시장에서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OECD는 1997. 11. 21.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채택하였고, 2014. 5. 현재 OECD 34개 회원국 및 7개 비회원국 등 총 41개 국가가 이를 비준하였다.

동 협약은 비준국에 대하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재하는 입법적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은 협약의 취지를 수용한 그러나 각국의 특성에 맞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협약의 시행초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에 의해 국제적 뇌물행위를 조사, 처벌하는 노력이 선도되었으나, 최근의 경향은 브라질 등과 같이 개발도상에 있는 자원부국 등도 동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들은 입법의 개정 등을 통해 자국외에서 행해지는 불법적 뇌물행위에 대해 자국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행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조사,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에너지, 자원다소비국의 대표적인 사례이면서도 자원최빈국에 속하여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은 포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인바, 해외에서의 뇌물행위를 처벌하는 국내법을 넘어서 각국의 입법례를 파악하고 기업내부의 준법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사전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뇌물행위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방지함과 동시에 사후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국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처벌의 수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주요어: 에너지, 부정행위, 외국공무원, 뇌물,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FCPA, 영국 Bribery Act, 캐나다 CFPOA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Pride International, Inc.는 2010. 11. 04. 자신 및 자신의 자회사들이 남미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시추계약의 연장을 위해 제공한 뇌물혐의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US\$ 32.6M의 벌금을 미국법무부에 US\$ 23.5M의 불법이익을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환수(Disgorgement)되었다. 한편, Siemens는 2008. 12. 15.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에서의 자회사 뇌물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미국법무부에 US\$ 450M의 벌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US\$ 350M의 불법이익을 각 지급하고, 독일 당국에 대해서도 US\$ 814M를 지급하는 등 양 국가에 대하여 총 US\$ 1.6B를 지급함으로써 Siemens에 대한 그간의 뇌물혐의를 마무리 하였다.

세계 각국은 기업이 국제활동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패를 방지하고 감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Siemens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배가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의 부패방지를 위한 첫 걸음은 국내입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세계 각국은 자국내의 불법행위 즉, 국내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모두 입법화 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국의 기업 내지 자국과 연관된 기업 내지 개인 등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뇌물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국제적으로는 1997. 11. 21. OECD(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라 함)가 채택한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하 ‘뇌물방지협약’ 이라 함)” 이 주요 국제규범이라 할 것인데, 선진제국은 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동 협약 이전부터 해외에서의 불법적 금품수수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있었으며, 최근의 입법례는 선진제국가들을 넘어서서 개발도상국가들도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에너지·자원업계는 특히 뇌물 유혹에 매우 취약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는데, 에너지·자원분야는 국제적 규모로 운영되고, 에너지·자원의 속성상 시기에 민감할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의 확보에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며, 자원개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매우 방대하고, 광권의 획득 및 광구탐사, 개발, 생산에의 참여 등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정부측 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그들과 기업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자원분야의 특성 때문에 미국법무부가 기소유예약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을 통해 추징한 벌금액의 약 60%는 에너지·자원회사

로부터 기인한다고 평가되고 있고²⁾, 영국 또한 2012년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는 석유, 가스 업계가 뇌물로 인한 기소가 가장 많으며³⁾ 조사가 종결된 26개 사안중에서 기소된 사건의 약 1/5이 석유 및 가스업계와 연결되었다 한다.

이하에서는 OECD의 뇌물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및 협약의 실천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및 캐나다의 관련 입법 및 입법의 실제 적용례를 살펴본 다음 에너지업계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OECD의 뇌물방지협약

1. 개요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시장에서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최소한 OECD국가들간에서라도 국제상거래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뇌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1997. 12. 17. 체결되었고, 1999. 02. 15. 그 효력이 발효되었다. 뇌물방지협약을 서명한 국가에게는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입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OECD 자체에 의해 동 협약의 실행을 강제하지는 못하는 반면 서명국가의 이행정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동 협약은 뇌물수수를 “공급” 측면에서 규제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최초의 것이라 하겠다.

전문 및 총 17조로 구성된 뇌물방지협약은 2014. 5. 21. 현재 34개 OECD 회원국 및 7개 비회원국⁴⁾ 등 41개 국가가 비준을 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첨부 표 1.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 01. 04. 동 협약을 비준하고, 1999. 02. 15. 동 협약에 따른 이행입법으로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2014. 10. 15.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⁵⁾

2) 에너지회사의 몇가지 사례를 예로 들면, Siemens (Germany) \$800M (2008); KBR Halliburton (USA) \$579M (2009); Snamprogetti (Holland) & ENI S.p.A (Italy) \$365M (2010); Technip, S.A. (France) \$338M (2010); JGC Corporation (Japan) \$219M (2011); Panalpina (Switzerland) \$82M (2010); Total, S.A. (France) \$398M (2012)

3) <http://bpi.transparency.org/bpi2011/>

4)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라트비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5) 이전에는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들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2. 주요내용

뇌물방지협약의 주요내용 및 특징적 사항을 살펴보자.

가. 정의(Definition)(제1조)

동 협약에 따른 “외국공직자 뇌물공여죄(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는 “영업 또는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고의로 외국공직자에게 그 공직자가 공무수행에 관련하여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아니하도록 그 공직자나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제의하거나 약속하거나 교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외국공직자"라 함은 임명되거나 선출됨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또는 공공사업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해서 외국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상의 직위를 가진 자, 외국을 위하여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공적 국제기구의 대리인 또는 직원을 말하고, "외국"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정부의 모든 단계와 구획을 포함하며, "공무수행에 관련하여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아니하도록"이라 함은 당해 공직자의 공직자로서의 지위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위임된 권한 내에서 지위를 사용했는가는 불문한다.

나. 법인의 책임(제2조)

법인의 형사책임 부분은 형법이론의 주요 논쟁 사안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통상 당해 법률에 양벌규정의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논쟁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협약은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4조도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다.⁶⁾

이른바 ‘급행료’라 일컫는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었으나, 소액인 급행료도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법의 지배를 잠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OECD는 급행료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며, 국제투명성기구도 우리나라를 “OECD 뇌물방지협약 소극적 이행국”으로 분류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급행료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왔었던바, 국제기준 및 국제기구의 권고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동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682&lsId=&efYd=20141015&chrClsCd=010202&urlMode=lsEflnfOR&viewCls=lsRvsDocInfoR#0000>)

다. 제재(Sanction)(제3조)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는 형사처벌하고, 자연인에 대해서는 사법공조와 범인인도를 가능케 하기에 충분한 자유형으로, 법인의 경우 자국체계상 형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공여행위를 단념하게 할 수 있는 비형사적 제재가 법인에게 부과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뇌물수수에 따른 수익 등에 대해서는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외에도 민사, 행정적 제재의 부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제9조)

협약은 협약당사국들로 하여금 상호간의 사법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는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지체없이 알려주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요청의 상태와 결과까지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법공조 조건으로 쌍방국가에서의 이중범죄(Dual Criminality)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사법공조가 요청되는 범죄가 협약의 범위 내인한 이중범죄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아가 협약당사국들은 은행의 비밀을 이유로 사법공조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마. 범죄인인도(Extradition)(제10조)

외국공직자뇌물공여는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로 간주되고, 범죄인인도 조건으로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국가가 그러한 조약체결이 없는 국가로부터 범죄인인도요청을 받으면 본 협약을 범죄인인도의 근거로 고려할 수 있으며,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병인도요청을 거절하는 국가는 기소를 목적으로 자국에서 입건해야 한다. 한편, 이중범죄원칙을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시되는 범죄가 본 협약의 범위 내에 있으면 이중범죄원칙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각국의 이행 정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 5. 현재 세계 41개 국가들이 본 협약을 비준하고 그에 따른 입법조치를 하였으나 구체적 사안에의 법률적용은 각국 법집행당국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다. 현재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정도를 파악하는 국제조직은 두 개로 대별되는데, 국제상거래의 뇌물에 관한 OECD 실무위원회(Working Group)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그것이다.

국제상거래의 뇌물에 관한 OECD 실무위원회(Working Group)는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및 강제에 대한 점검을 책임지고 있고, 관련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⁷⁾ 그런데 실무위원회의 보고서는 각국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해외뇌물사안, 그중에서도 유죄로 확정된 사안만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국제투명성기구는 민간기구인데 투명성기구에 의해 지정된 각국의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해외뇌물사안뿐만 아니라 해외뇌물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사안들을 망라하여 다루면서 유죄판결로 확정된 사안뿐 아니라 기타의 수단 등을 통해 뇌물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 등도 포함하여 검토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보다 좀 더 광범하게 취급하고 있다 하겠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4년 발간한 보고서⁸⁾에 의하면, 각국은 뇌물방지협약의 집행 정도에 따라 아래 표에 보는 바와 같이 4단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분류된 기준 등은 별첨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다.

⁷⁾ <http://www.oecd.org/daf/anti-bribery/countryreportsontheimplementationoftheoecdanti-briberyconvention.htm>을 방문하면 실무위원회가 발간한 각국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더 알 수 있다.

⁸⁾ http://issuu.com/transparencyinternational/docs/2014_exportingcorruption_oecdprogre?e=2496456/9826003

적극적 이행국가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4개국, 세계수출의 23.1%
보통 이행국가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5개국, 세계수출의 8.3%
제한적 이행국가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뉴질랜드	8개국, 세계수출의 7.6%
소극적 또는 미이행국가	일본, 네덜란드, 한국,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멕시코, 브라질, 아일랜드, 폴란드, 터키, 덴마크, 체코, 룩셈부르크, 칠레,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콜롬비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22개국, 세계수출의 27%

III. 주요국가의 뇌물관련 입법

1. 미국 FCPA, 1977

미국은 1977년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 라 함)를 제정하였는데 FCPA는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공여자의 국내사업 및 임직원을 형사처벌하는 유일한 법률이었고 미국이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은 뇌물방지협약을 1998. 7. 31. 비준하고 동 협약에 따른 입법으로 1998년에 “International Anti-Bribery and Fair Competition Act” 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뇌물방지협약의 내용에 충실하게 FCPA를 개정하였는데 그 결과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관할을 인정이 인정되었다.

한편, 미국연방대법원은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사건을 통해 문제된 행위가 비록 미국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외국인주주가 해외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⁹⁾하였는데, 미국 상원은 위 판결에 대응하여 “Dodd-Frank Act¹⁰⁾” 를 제정함으로써 일정한 행위에 대한 미국의 역외관할권을 확장하였는바, 동 행위에 는 (1) 증권거래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고 외국투자자가 관계되어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심각한 위반을 가져올 행위 또는 (2) 미국 밖에서 행해지더라도 미국내의 심대한 영향이 예상

9) Morrison v. Nat'l Austl. Bank Ltd., 130 S. Ct. 2869, 2885 (2010)

10)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Pub. L. No. 111-203, 124 Stat/ 1376 (2010)

되는 행위로서 증권 및 반뇌물 관련 법령위반으로 주장되는 행위들이 포함되는데, FCPA는 이와 같은 개정의 역사를 통해 내국(법)인 외에 외국(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광범위한 관할권을 갖게 되었다.

FCPA는 크게 두가지 형태 즉, (1) record keeping provisions, (2) anti-bribery provisi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Recording Keeping Provisions은 거래를 정확히 반영하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세세히 그리고 정확히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¹¹⁾ 그리고 Anti-Bribery Provisions은 공무행위에 영향을 주고자 하거나 외국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공적 의무에 위반하여 정부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불손한 의도로 가치있는 물품을 외국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외국공무원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는 이에게 지급,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FCPA의 anti-bribery provisions에는 하나의 예외규정과 두 개의 방어수단이 있는바, "grease payment 또는 facilitation payment"로 알려진 "통상적 정부활동(routine governmental actions)¹²⁾"의 예외와 "합법적 지급(lawful payment)¹³⁾" 및 "합리적인 선의의 지출(reasonable, bona fide expenditures)¹⁴⁾" 등이 그것이다.

FCPA의 Anti-bribery Provision 위반의 경우에는 민, 형사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비록 FCPA는 법을 위반한 법인에게에는 벌금 US\$2M를 한도로, 개인에게는 벌금 US\$0.1M와 최고 5년의 징역형을 한도로 형사상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체는 미국양형기준(US Sentencing Guideline)에 입각하여 벌금을 부과하여 실제 사례에 있어서 부과되는 벌금은 천문학적 금액이 되고 있다.¹⁵⁾ 이러한 제재 외에도 정부계약기회박탈, 불법이익의 몰수 등이 추가 제재로 부가되기도 한다. FCPA 위반의 많은 경우는 기소유예약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을 통해 해결되는데, 동 약정의 내용에는 보통 벌금납부, 공소시효 포기, 정부활동에의 협조 및 관련사실의 시인, 준법감시활동(Compliance Program), 외부감독 등이 포함되어 있다.

11) 본 논문에서는 Record Keeping Provisions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12) 비자나 노동허가를 받는데 지급하는 금원 등이 일례이다.

13)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 경우를 의미하나 뇌물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있을 수 없기에 큰 의미가 있는 방어수단은 아니다.

14) 외국공무원을 위해 지출하는 합리적 범위의 여행경비 등이 그 예이다.

15) 기업에 대한 벌금산정시 산출에 필요한 여러 인자들이 있으나 중요한 감경사유중 하나는 기업에 Compliance Program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 여부이다.

2. 영국 Bribery Act, 2010

영국은 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준하고서도 13년이 지난 2010년 Bribery Act를 제정하고 2011. 7. 01.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 동안 영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실 영국의 입법은 영국군수업체인 BAE Systems와 사우디아라비아가 1980년대 중반 체결한 US\$65B에 달하는 전투기의 공급계약에 연루된 뇌물혐의로 말미암아 마지못해 이루어진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뇌물혐의가 발견된 후 영국정부는 동 계약이 영국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조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미국에 의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 영국의 기소가 이어졌다. Bribery Act, 2010은 이와 같은 사단이 발생한 후 제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어서인지 영국의 Bribery Act, 2010은 미국 FCPA와 그 내용상 대동소이하나 어느 면에서는 미국 FCPA보다 훨씬 더 엄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에서 국내, 국외의 부패를 조사, 기소하는 주요기구인 "Serious Fraud Office(SFO)"로서, Bribery Act에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및 개인/법인에 대하여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미국 FCPA와 달리 "grease payment 또는 facilitation payment"로 알려진 "통상적 정부활동(routine governmental actions)"을 근거로 한 방어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미국보다 훨씬 더 광범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영국에 설립된 회사이거나 영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한 뇌물이 영국과 관련되거나 관련자들이 영국과 관련되지 않아도 Bribery Act의 적용을 받는다.

3. 캐나다 CFPOA, 1998

캐나다 역시 1998년 "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ct(CFPOA)" 제정 이전에는 해외에서의 사업기회 획득을 위해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입법은 없었다. CFPOA는 뇌물에 대하여 subsection 3(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FCPA와 비교하여 별 다른 차이가 없다.

Every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in order to obtain or retain an advantage in the course of business, directly or indirectly gives, offers or agrees to give or offer a loan, reward, advantage or benefit of any kind to a foreign public official or to any person for the benefit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 (a) as consideration for an act or omission by the official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official's duties or functions; or
- (b) to induce the official to use his or her position to influence any acts or decisions of the foreign state or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which the official performs duties or functions.

외국공무원의 뇌물과 관련한 부패에 대하여 조사하는 기관은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RCMP)"이다. 캐나다의 경우 독특한 것은 동일화 이론(identification theory)인데 이는 법인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에서 발달된 관레이론인데 법인의 구성원이 고의, 중과실 또는 의도적인 묵인하에 불법을 행하는 경우 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국민의 해외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OECD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캐나다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그 범법행위의 전부 내지 일부가 캐나다에서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CFPOA의 2013년 개정을 통해 이 조건을 폐지하였다.

4. 구체적 사례 검토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뉴욕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제석유기업인 Statoil ASA는 사업영역을 국제적으로 더욱 확장하고자 하면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특히 이란으로부터 석유, 가스개발권을 획득하고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당시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전의 하나로 알려진 South Pars의 개발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2001년 Statoil은 이란에서 석유, 가스계약건의 체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정부공무원과 계약을 맺고자 하였으며, 2001, 2002년에 걸친 공무원과의 협상을 통해 Statoil은 해외중개회사(offshore intermediary company)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자문계약에 의하면 11년에 걸쳐 US\$15M을 상회하는 자문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동 계약의 실제 목적은 이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South Pars에 대한 계약을 Statoil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이란의 석유, 가스전에 대한 추가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실제 2번에 걸쳐 뉴욕은행 계좌를 통해 US\$5M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졌고 Statoil은 South Pars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스위스 석유서비스기업으로서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Weatherford International Limited의 자회사인 Weatherford Services Limited의 직원은 2004년부터 2008년에 걸쳐 아프리카에서 그곳의 공무원 및 친척들의 관리를 받는 2개의 현지법인과 합작사를 설립, 운영하였는

데, 합작사의 파트너가 될 법인은 현지 공무원이 지정하였으며, Weatherford International과 Weatherford Services의 직원들은 파트너될 법인의 구성원들이 현지공무원의 친인척이나 그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지법인이 합작사에 자본, 노동, 경험 등을 포함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Weatherford International과 Weatherford Services는 그와 같은 현지법인이 왜 합작파트너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실 현지법인을 이용한 유일한 목적은 현지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Weatherford Services는 합작회사를 통해 현지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 반대급부로 합작회사에는 수익성이 높은 계약을, Weatherford Services에게는 경쟁자의 가격 등을 포함한 내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Weatherford Services의 경쟁자와의 계약을 방해하고 이를 합작회사에 체결하도록 하였다.

Weatherford Services는 석유서비스계약의 갱신을 위해서 화물운송업자를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하였다. 즉, Weatherford Services는 2006년 7월 운송업자에게 허위의 자문계약을 요청하고, 동 계약에 의거 운송업자는 제공하지도 않은 자문료청구를 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후, 동 금원의 일부를 석유서비스계약 갱신의 권한을 보유한 공무원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공무원은 Weatherford Services와의 석유서비스계약 갱신을 하였다.

Weatherford International Limited의 자회사인 Weatherford Oil Tools Middle East Limited의 직원들은 중동에서 2005년에서 2011년에 걸쳐 또 다른 형태의 불법행위를 하였는데, Weatherford International의 제품을 국영석유회사에 공급하는 배급업자에게 비정상적 할인을 하여주었으며, 할인된 금원은 비작금으로 조성되어 국영석유회사의 정책결정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여 조성된 금원은 2005년부터 2011년에 걸쳐 약 US\$15M에 달하였다.

이상과 같은 불법행위의 결과 Statoil은 US\$10.5M의 벌금부과 외에 3년간의 기소유예약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동 기간 동안 외부의 독립된 준법감시인에 의한 감독, 내부의 자율적 통제 등 여러 협력의무를 부과받았다.

한편, Weatherford International과 4개 자회사들은 총 US\$100M에 달하는 벌금 및 기소유예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동 사안을 조사하던 중 FCPA위반이 아닌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도 발견되어 Weatherford International과 자회사들은 2개의 기소유예약정을 체결하고 벌금, 민사합의금을 포함 총 US\$252,690,606를 지급하였다.

IV. 제언

최근 국내기업 특히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자원개발실적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상당히 냉소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할 것인바,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우발적 상황은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외공무원과 관련한 뇌물사안을 살펴보면 사업기회 획득을 위한 사업자의 적극적 뇌물(active bribery)뿐 아니라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외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는 수동적 뇌물(passive bribery)의 경우도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뇌물방지협약과 같은 국제규범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국의 상황에 따른 국내입법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부패 특히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뇌물공여자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법률에 의해 처벌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의 국제적 동향은 뇌물공여를 타파하고자 하는 선진국가의 선도적 역할을 넘어서서 브라질¹⁶⁾, 중국 등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가 등에서도 동일한 노력이 점증하고 있어 자원개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국제적 에너지, 자원기업은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제국은 자국법률의 역외적용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표적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조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의 폭증하고 있는 국제적 활동 및 현재 이러한 조사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국제사회에서의 실질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해외법률의 역외적용은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문제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에너지, 자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가의 조사가 있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기업과 서방선진국가의 지리적 이격으로 인한 조사의 곤란함과 더불어 국내에너지, 자원기업의 국제적 위상이 미미하다는 자조적 상황의 반증으로 평가되고, 향후 국내기업의 위상이 제고, 확대되어 간다면 앞의 사례 등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16) 브라질은 올해 초 "clean Companies Law"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국내에너지, 자원기업은 기업내부으로도 준법감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하여 기업의 반뇌물, 반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국의 양형 기준, 기소유예약정에 제시된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여러 형태의 기업내부 활동 등을 파악하여 미리 기업의 활동 모습으로 마련해 두는 지혜도 필요하겠다.

〈 참고 문헌 〉

-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The International Anti-Bribery Act of 1998 Amends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nd Implements the OECD Conventi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1998)
- Matthias Ruth, "Corruption and the Energy Sector", Management Systems International (2002)
-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4, p.109
- Gordon Kaiser, "Corruption in the Energy Sector: Criminal Fines, Civil Judgement, and Lost Arbitrations" (2012)
- Transparency International, "Exporting Corruption", Progress Report (2014)
- Tom Bummins and Prateek Swaika, "Bribery and Corruption: Implications for Energy Companies", EnergySource (2014)

〈 별첨 자료 〉

- 별첨자료 1.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Ratification Status as of 21 May 2014**

Country	Deposit of instrument of acceptance/approval/ratification/accession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Entry into force of implementing legislation
Argentina	8 February 2001	9 April 2001	10 November 1999
Australia	19 October 1999	18 December 1999	17 December 1999
Austria	20 May 1999	19 July 1999	1 October 1998
Belgium	27 July 1999	25 September 1999	3 April 1999
Brazil	24 August 2000	23 October 2000	11 June 2002
Bulgaria	22 December 1998	15 February 1999	29 January 1999
Canada	17 December 1998	15 February 1999	14 February 1999
Chile	18 April 2001	17 June 2001	8 October 2002
Colombia	20 November 2012	19 January 2013	14 November 2012
Czech Republic	21 January 2000	21 March 2000	9 June 1999
Denmark	5 September 2000	4 November 2000	1 May 2000
Estonia	14 December 2004	12 February 2005	1 July 2004
Finland	10 December 1998	15 February 1999	1 January 1999
France	31 July 2000	29 September 2000	29 September 2000
Germany	10 November 1998	15 February 1999	15 February 1999
Greece	5 February 1999	15 February 1999	1 December 1998
Hungary	4 December 1998	15 February 1999	1 March 1999
Iceland	17 August 1998	15 February 1999	30 December 1998
Ireland	22 September 2003	21 November 2003	28 November 2001
Israel	11 March 2009	10 May 2009	21 July 2008
Italy	15 December 2000	13 February 2001	26 October 2000
Japan	13 October 1998	15 February 1999	15 February 1999
Korea	4 January 1999	15 February 1999	15 February 1999
Latvia	31 March 2014	30 May 2014	21 March 2014
Luxembourg	21 March 2001	20 May 2001	11 February 2001
Mexico	27 May 1999	26 July 1999	18 May 1999
Netherlands	12 January 2001	13 March 2001	1 February 2001
New Zealand	25 June 2001	24 August 2001	3 May 2001
Norway	18 December 1998	15 February 1999	1 January 1999
Poland	8 September 2000	7 November 2000	4 February 2001
Portugal	23 November 2000	22 January 2001	9 June 2001
Russian Federation	17 February 2012	17 April 2012	18 May 2011
Slovak Republic	24 September 1999	23 November 1999	1 November 1999
Slovenia	6 September 2001	5 November 2001	23 January 1999
South Africa	19 June 2007	18 August 2007	27 April 2004
Spain	14 January 2000	14 March 2000	2 February 2000
Sweden	8 June 1999	7 August 1999	1 July 1999
Switzerland	31 May 2000	30 July 2000	1 May 2000
Turkey	26 July 2000	24 September 2000	11 January 2003
United Kingdom	14 December 1998	15 February 1999	14 February 2002
United States	8 December 1998	15 February 1999	10 November 1998

· 별첨자료2.

Foreign Bribery Enforcement of OECD Anti-Bribery Convention Countries

COUNTRIES	Share of world exports Average past 4 years*	Investigations commenced (weight of 1)				Major cases commenced (weight of 4)				Other cases commenced (weight of 2)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ACTIVE ENFORCEMENT (4 countries) 23.1%													
US	9.8	24	27	24	24	2	4	2	4	0	0	2	0
Germany	8.2	15	32	19	14	1	1	2	2	4	11	3	0
UK	3.6	11	6	2	11	4	3	1	0	0	0	0	0
Switzerland	1.6	10	16	19	22	0	0	0	0	0	0	0	0
MODERATE ENFORCEMENT (5 countries) 8.3%													
Italy	2.6	4		8	2	1	1		1	0		9	0
Canada	2.6	1	10	2		1	2	2	3	0	0	0	0
Australia	1.4	4	5	10	11	0	1	0	0	0	0	0	1
Austria	1.1	5	5	2	1	0	1	2	1	0	0	0	0
Finland**	0.6	0	1	0	0	1	0	2	1	0	0	0	0
LIMITED ENFORCEMENT (8 countries) 7.6%													
France	3.4	4	1	2	9	1	2	0	0	2	1	1	0
Sweden	1.2	2	0	3	2	0	0	1	0	0	0	0	1
Norway	0.9	0	2	1	0	0	1	0	0	0	0	0	0
Hungary	0.6	1	1	0	0	0	0	0	0	0	1	0	0
South Africa	0.6	3	2	1	1	0	0	0	0	0	0	0	0
Argentina	0.4	0	0	0	0	1	0	0	0	0	0	0	0
Portugal**	0.4	1	0	2	5	0	0	0	0	0	0	0	0
New Zealand	0.2	0	0	0	2	0	0	0	0	0	0	0	0
LITTLE OR NO ENFORCEMENT (22 countries) 27%													
Japan	4.0	0	1		2	0	0		0	0	0		1
Netherlands	3.1	3	3	3	1	0	0	0	0	0	0	0	0
Korea (South)	3.0	0	0	0	3	0	1	0	0	0	3	0	3
Russia***	2.6	0	0	0	0	0	0	0	0	0	0	0	0
Spain	2.0	1	1	0	0	0	0	0	0	0	0	0	0
Belgium	1.9						1						
Mexico	1.7	0	0	0	0	0	0	0	0	0	0	0	0
Brazil	1.3	0	2	3	0	0	0	0	0				0
Ireland	1.1	0	0	0	0	0	0	0	0	0	0	0	0
Poland	1.1	0	0	0	0	0	0	0	0	0	0	1	0
Turkey	0.9	1	3	0	1	0	0	0	0	0	0	0	0
Denmark	0.8	0	0	3	0	0	0	0	0	0	0	0	0
Czech Republic	0.7	0	1	2	0	0	0	0	0	0	0	0	0
Luxembourg	0.6	1	0	1	0	0	0	0	0	0	0	1	0
Chile	0.4	3	0	0	0	0	0	0	0	0	0	0	0
Israel	0.4	0	0	0	0	0	0	0	0	0	0	0	0
Slovak Republic	0.4	0	0	0	0	0	0	0	0	0	0	0	0
Colombia***	0.3				0				0				0
Greece	0.3			1									
Slovenia	0.2	0	0	1	0	0	0	0	0	0	0	0	0
Bulgaria	0.2	0	0	0	0	0	0	0	0	0	0	0	0
Estonia	0.1	0	0	0	0	0	0	0	0	0	0	0	0

NE: Blank is mean "statistical data not available".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cretariat provided the country representatives of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with an advanced draft of the full report to receive their comments, including on investigations and cases.
* Obtained from OECD for 2010-2013. ** Without any major case commenced during the

past four years a country does not qualify for being a moderate enforcer and without a major case with substantial sanctions being concluded in the past four years a country does not qualify for being an active enforcer. *** The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Russia in April 2012 and in Colombia in January 2013, and so requirements were lowered proportionally.

- 별첨자료 3.

COUNTRIES	Major cases concluded with substantial sanctions (weight of 10)				Other (non-major) cases concluded with sanctions (weight of 4)				Total points	Minimum points required for enforcement levels depending on share of world exports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past 4 years	active	moderate	limited
ACTIVE ENFORCEMENT (4 countries) 23.1%												
US	21	16	18	13	27	20	11	7	1,081	392	166	98
Germany	3	3	6	0	2	16	24	14	458	328	164	82
UK	6	7	1	2	0	1	0	0	249	144	72	36
Switzerland	0	2	0	2	1	1	1	3	131	60	30	15
MODERATE ENFORCEMENT (5 countries) 8.3%												
Italy	1	0	1	0	0	1		0	68	112	56	28
Canada	0	1	0	1	0	0	0	0	65	100	50	25
Australia	0	0		0	0	0	1	1	44	66	28	14
Austria	0	0	0	0	0	0	0	0	29	44	22	11
Finland**	0	0	0	0	0	0	0	1	21	20	10	5
LIMITED ENFORCEMENT (8 countries) 7.8%												
France	0	0	0	0	1	1	1	1	52	136	68	34
Sweden	0	0	1	0	0	0	0	0	23	48	24	12
Norway	0	0	0	0	0	1	0	0	11	36	18	9
Hungary	0	0	0	0	0	1	0	0	8	24	12	6
South Africa	0	0	0	0	0	0	0	0	7	20	10	5
Argentina	0	0	0	0	0	0	0	0	4	16	8	4
Portugal**	0	0	0	0	0	0	0	0	8	16	8	4
New Zealand	0	0	0	0	0	0	0	0	2	8	4	2
LITTLE OR NO ENFORCEMENT (22 countries) 27%												
Japan	0	0		0	0	0		1	9	160	80	40
Netherlands	0	0	1		0	0	0	1	24	124	62	31
Korea (South)	0	0	0	0	0	0	0	0	19	120	60	30
Russia***	0	0	0	0	0	0	0	0	9	43	22	11
Spain	0	0	0	0	0	0	0	0	2	80	40	20
Belgium		1							14	76	38	19
Mexico	0	0	0	0	0	0	0	0	9	68	34	17
Brazil	0	0	0	0	0	0	0	0	5	62	26	13
Ireland	0	0	0	0	0	0	0	0	9	44	22	11
Poland	0	0	0	0	0	0	1	0	6	44	22	11
Turkey	0	0	0	0	0	0	0	0	5	36	18	9
Denmark	0	0	0	0	0	0	0	0	3	32	16	8
Czech Republic	0	0	0	0	0	0	0	0	3	28	14	7
Luxembourg	0	0	0	0	0	0	0	0	4	20	10	5
Chile	0	0	0	0	0	0	0	0	3	16	8	4
Israel	0	0	0	0	0	0	0	0	9	16	8	4
Slovak Republic	0	0	0	0	0	0	0	0	9	16	8	4
Colombia***				0				0	9	3	2	1
Greece									1	12	6	3
Slovenia	0	0	0	0	0	0	0	0	1	8	4	2
Bulgaria	0	0	0	0	0	0	0	0	9	8	4	2
Estonia	0	0	0	0	0	0	0	0	9	4	2	1